
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지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21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2.

발 의 자 : 서지영 · 정연욱 · 김은혜
이인선 · 곽규택 · 박성훈
이현승 · 강승규 · 정성국
조승환 · 박수민 · 주진우
김용태 · 김승수 · 최수진
김미애 · 서천호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「담배사업법」에 따른 담배는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된 반면, 합성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은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청소년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합성 · 유사니코틴 함유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판매 등을 금지하고, 합성 · 유사니코틴 함유제품을 판매하는 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출입 · 고용을 금지함으로써 합성 · 유사니코틴 함유제품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조, 제28조 및 제59조).
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가목에 2)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)의2 합성·유사니코틴 함유제품[합성니코틴(원소·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된 니코틴을 말한다) 또는 유사니코틴(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니코틴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)을 원료나 성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체내로 흡입할 수 있도록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]

제2조제5호가목에 12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) 합성·유사니코틴 함유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주류나 담배(이하 “주류등”이라 한다)를”을 “주류, 담배 또는 합성·유사니코틴 함유제품(이하 “주류등”이라 한다)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합성·유사니코틴 함유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

제59조제6호 중 “제2조제4호가목1)·2)”를 “제2조제4호가목1)·2)·2)의2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“청소년유해약물등”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(이하 “청소년유해약물”이라 한다)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(이하 “청소년유해물건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	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가. 청소년유해약물	가. -----
1) · 2) (생 략)	1) · 2)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2)의2 합성 · 유사니코틴합</u> <u>유제품[합성니코틴(원소</u> <u>· 화합물 및 그에 인위</u> <u>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</u> <u>어진 물질을 합성하여</u> <u>인공적으로 제조된 니코</u> <u>틴을 말한다) 또는 유사</u> <u>니코틴(니코틴과 유사한</u> <u>화학구조를 가진 물질을</u> <u>사용하여 제조된 것으로</u>

가.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
소

1) ~ 11) (생략)

<신설>

나. (생략)

6. ~ 8. (생략)

제28조(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
·대여 등의 금지) ① ~ ④
(생략)
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
중 주류나 담배(이하 “주류등”
이라 한다)를 판매·대여·배
포하는 경우 그 업소(자동기계
장치·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하
다)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
등의 판매·대여·배포를 금지
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.
다만,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
소는 제외한다.

1.·2. (생략)

<신설>

가. -----
--

1) ~ 11) (현행과 같음)

12) 합성·유사니코틴 함유
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
판매하는 영업 중 대통
령령으로 정하는 것

나. (현행과 같음)

6. ~ 8.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
·대여 등의 금지) ① ~ ④
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주류, 담배 또는 합성·유
사니코틴 함유제품(이하 “주류
등”이라 한다)을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합성·유사니코틴 함유제품을
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

3. (생략) ⑥ ~ ⑩ (생략) 제5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~ 5. (생략) 6.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<u>제2조제4호가목1)·2)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)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·대여·배포(자동기계장치·무인판매장치·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·대여·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제공한 자</u> 7. ~ 9. (생략)	4. (현행 제3호와 같음) ⑥ ~ ⑩ (현행과 같음) 제59조(벌칙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-----제2조제4호가목1)· <u>2)·2)의2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7. ~ 9. (현행과 같음)
--	--